

— 구미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(안)—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안 자 : 구미시장

2. 제안이유

- 설치목적의 일부 내용을 보완하고 관련 법령 개정으로 법령에 맞게 조문을 개정

3. 주요내용

- 감면조례 설치목적에 “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” 내용 보완
- 음성나환자 집단촌 지원을 위한 감면 ⇒ 한센정착농원 지원을 위한 감면
- 문화재에 대한 감면
 -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50/100 경감 ⇒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50/100경감.
- 주차장법에 의거 설치한 주차전용 건축물 감면 규정 신설
- 주차장법에 의거 설치한 주차전용 토지에 대한 감면 규정 신설

4. 참고사항

- 경상북도시·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표준안
- 주차장법 제12조 설치조례
- 지방세법

5. 검토의견

- 경상북도시·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의거 구미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임.
-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관련조항 개정이나, 도심 주차난 해소 등을 위해 주차장법에 의해 통보하고 설치하는 노외주차장 관련 조항인 제15조의2와 제

15조의3은 폐지되었다가 신설되는 조례안임.

- 기존 조례에 관련 규정을 두고 있는 시는 4개시(경주,경산,영천,문경)가 관련 규정을 두고 있으며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전용토지와 건축물에 감면 규정을 적용코자 신설하는 조례안임.